부전공 시행세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0조에 의거하여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강범위)

본교 전 학과에서 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제 3 조 (신청자격 및 절차)

① 누적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0(3.0)이상인 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부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부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전공 학과장 및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부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은 부전공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④ 부전공은 복수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

⑤ 부전공 신청자는 주전공의 졸업기준 충족 후, 부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최대 2년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3.>

⑥ 동일 학부 내 세부전공 간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 <신설 2016.07.21>

제 4 조 (이수학점)

① 부전공 신청자는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전공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0>

② 부전공 교과목이 주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.

③ 부전공 중도포기자 및 부전공 자격미달자가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.

④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C0(2.0)이상이어야 한다.

제 5 조 (학위수여)

①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부전공 자격신청서를 부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부전공 학과장은 사정결과를 주전공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12.29>

③ 부전공 사정에 합격한 자는 주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을 병행표기한 학위를 수여한다.

④ 부전공 사정에 불합격한 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

부 칙

(1) 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의 학사처리는 이 세칙에 의거 소급·적용된 것으로 본다.

(2)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경과조치) 제4조(이수학점) ①항은 2017학번부터 적용한다. 단, 2016년 이전 학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 세칙을 적용하며, 2019학년도부터는 개정된 세칙에 따라 일괄 적용한다. <개정 2018.12.13>
(2)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2월 2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